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 본 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471호, 2023.9.14.)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수정한 수정 공고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 >

-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 제공 대상(6p)
 - (기존) '23.10.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 (변경) '23.12.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의 중기부 제외 대상(6p)
 - (기존)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변경)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개요

□ 추진목적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3.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공포('23.7.18일)

□ 추진개요

-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붙임 14p 참조)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연동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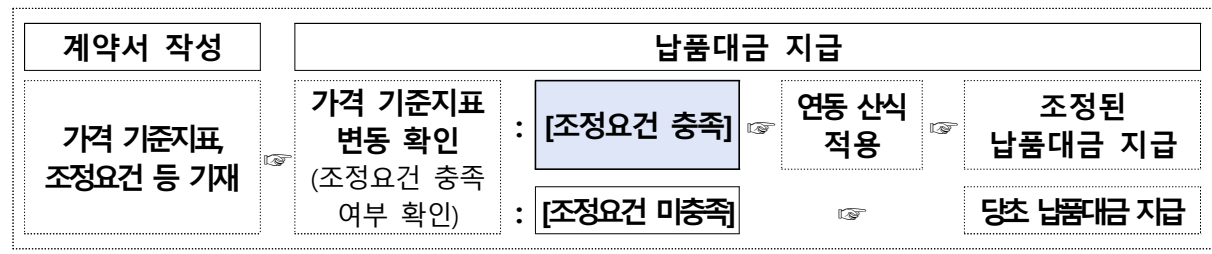
◆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효과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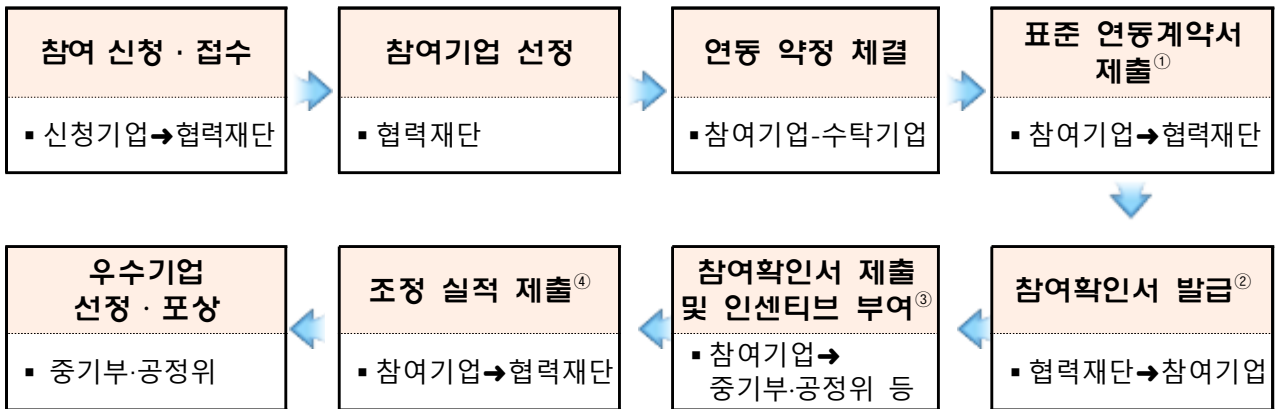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추진절차)



◆ 연동체결 및 조정실적 제출 세부 운영절차

① (표준 연동계약서 제출)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의 연동약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위탁기업-수탁기업 담당자 정보 포함

② (참여확인서 발급) 위탁기업이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출한 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③ (인센티브 부여) 참여기업은 '동행기업 참여시 제공 인센티브'(☞ 5p 참조)를 부여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

④ (조정실적 제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 (☞ 7p 참조)

2 동행기업 모집

□ 모집개요

- (신청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3.12.31일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
 -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 ② 연동제 운영 계획서
 - ※ 단, 연동약정서 체결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④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선정요건

-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 연동 약정서 체결 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확인서'를 발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4년 12월말까지 유효)
 - ※ 연동 조정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인센티브의 경우 협력재단으로부터 "연동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
- *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 등 연동 조정실적 (☞ 7p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협력재단에 제출

3**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 ('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위탁기업에 한하여 제공하며, '24년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부여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위탁기업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 까지 확대
-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 ⑫ (공통) '24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 **공정거래위원회**

-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⑤ (공통) '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 금융위원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23.12.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업 범위>

구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견기업/ 그밖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 지방공공기관***	비고
참여 수탁기업수	100개사 이상	40개사 이상	20개사 이상	'23. 12.31일 기준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50개사 이상	20개사 이상	10개사 이상	'24. 1.31일 기준

* 공정위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 (우대혜택) '24년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 (제외대상) 중기부, 공정위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소관부처의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 제외사유가 하도급법 관련인 경우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상생협력법 관련인 경우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 (중기부)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공정위) '23년 실태조사 등의 결과로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고려기간: '23. 5. 1. ~ '24. 4.30. (1년간), ** '24. 5. 1. 기준
- (기타) '연동계약 체결'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또는 하도급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의미함.

□ 연동 실적 확인서 발급요청 서류

①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엑셀)

연번	수탁 기업명	대상약정 명칭	체결 일자	대상 물품명	대상 원재료	원재료 기준지표	조정 전 납품단가	조정 된 납품단가	납품단가 조정 전 납품금액	납품단가 조정 후 납품금액
1	A사	동 케이블 제작 위탁	22.1.1	동 케이블	동	LME 고시가 (전기동 고시가)	1,000원	1,100원	10백만 원	12.5백 만원

② 납품단가 변동표 사본(PDF) 파일

□ 기타사항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우수기업 선정 안내 7p)

4 우수기업 선정 안내

□ 선정기준

-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
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23. 12월 예정)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정 예정(~'23년 중)

5 기타

- 기존 시범운영(중기부 공고 제2022-482호) 및 상시모집(제2022-526호)과
자율운영(공정위 공고 제2022-147호) 참여기업의 경우 동행기업 참여
의사 확인 후 '동행기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

□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 7942
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	02-368-8969, 8929

[첨부 1]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자유양식 사용가능)

1. 추진목적

참여 목적 및 배경

○

2. 기업 현황 소개

일반 수탁·위탁거래 현황

○ (주요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 등을 기재)

연동제 운영 현황

○ (이미 연동제 운영 중인 경우 계약 형태, 운영 규모·적용 수탁기업 등을 기재)

3. 세부 운영계획

수탁·위탁거래 관련 연동제 운영 계획 설명

○

-

연동제 적용이 계획된 수탁기업 수 및 거래 규모

(엑셀로 제출 가능)

수탁기업명 (사업자번호)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할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수탁·위탁거래 대상 물품명	주요 원재료* 후보	수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 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홍보계획 등

○

4. 기대효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5. 기타사항

기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첨부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 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개인)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나. **활용의 목적**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현황 파악, 연동실적 확인 등

다. **활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추후지정)

라.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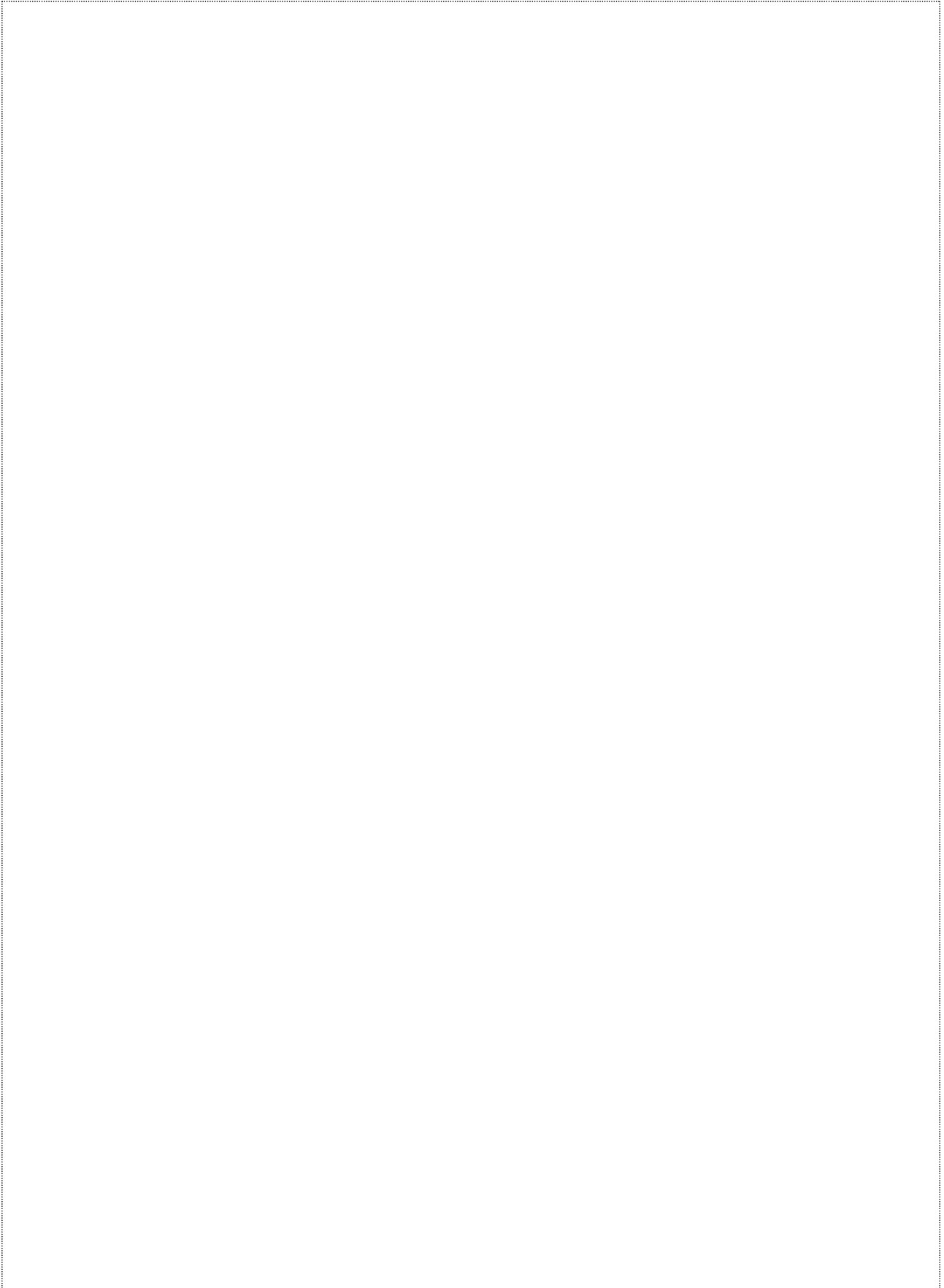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첨부 3] 사업자등록증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